부 천 대 장 공 공 주 택 지 구
전 략 환 경 영 향 평 가

(평가항목 · 범위 등의 결정내용)

2019. 7.

제 1 장 계획의 목적 및 개요

1.1 계획의 목적

○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2018년 9월 13일 수도권 택지에 30만호를 공급하는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하였으며, 1차('18.09.21)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2차('18.12.19) 「제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에 이어서 3차('19.05.07) 「제3차 신규택지 추진계획」을 발표하였음

○ 본 계획지구는 서울 강서구, 인천 계양구와 인접하고 있으며, 경인고속도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광명서울고속도로(예정) 이용시 서울권 접근성 우수한 지역으로 반경 5km 이내에 수요 유발요인인 김포공항, 계양지구, 오정물류단지, 오정산업단지, 서운산업단지 등 다수 분포하여 공공주택 공급수요가 충분한 것으로 전망됨

- 부천시 5대 특화산업(패키징, 금형, 로봇, 조명, 만화 등)과 지식기반산업 관련 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4차산업 실증단지 조성, 문화·생태 등의 테마공원 조성, 복합문화센터 설치 등 자족도시 기능이 강화된 공공주택지구로 계획하고자 함

1.2 계획의 개요

1.2.1 계획의 개요

○ 계 획 명 : 부천대장 공공주택지구

○ 위 치 : 경기도 부천시 대장동, 오정동, 원종동, 삼정동 일원

○ 면 적 : 3,434,660㎡(개발제한구역 3,430,406㎡ 포함)

○ 수용가능인구 : 47,000인(20,000세대)

○ 사 업 기 간 : 2020년 ~ 2029년

○ 사업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 승 인 기 관 : 국토교통부

○ 협 의 기 관 : 환경부

1.2.2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 작성 근거

○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에 의거하였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의 작성방법 등) 및「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8-205호)」에 따라 작성함

○ 또한, 「환경영향평가법」 제24조제6항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에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을 포함하여 결정함으로써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 이 경우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에 따라 결정된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은 동법 제2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환경영향평가항목등으로 봄

1.2.3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 본 계획은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2항 관련 [별표2]의 2. 개발기본계획【가. 도시의 개발】에 관한 계획으로「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의 지정[지정면적 : 3,434,660㎡(개발제한구역 포함)]에 해당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함

<표 1-1> 환경영향평가법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및 협의 요청시기

구 분	개발기본계획의 종류	협의 요청시기
가. 도시의 개발	10)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등	「공공주택 특별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주)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도시·군관리계획으로서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이나「공공주택 특별법」 제22조제4항에 의거 지구계획 승인 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사항으로「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별표 2] 비고3에 따라 지구계획 수립 시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함으로써 제외됨

자료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별표 2]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및 협의 요청시기

1.2.4 계획의 추진경위 및 향후계획

○ 2019. 04. : 공공주택지구 지정제안

○ 2019. 06. :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 제출

○ 2019. 08.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제출(예정)

○ 2019. 09. : 주민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예정)

(그림 1-1) 계획지구 위치도

(그림 1-2) 계획지구 위성 및 전경사진

제 2 장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2.1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의견수렴 개요

○ 근거법령 :「환경영향평가법」제8조,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및 제10조

○ 계획수립기관 : 국토교통부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 총 9인(국토교통부, 환경부, 지자체, 관련 전문가 등)

○ 심의방법 : 대면심의

○ 심의기간 : 2019. 7. 18.

○ 결정사항 : 대상지역의 설정, 토지이용구상안, 대안, 평가항목 및 범위·방법 등

제8조(환경영향평가협의회)
① 환경부장관, 계획 수립기관의 장, 계획이나 사업에 대하여 승인등을 하는 기관의 장(이하 "승인기관의 장"이라 한다) 또는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는 <u>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구성·운영</u>하여야 한다. 1. 제11조와 제24조에 따른 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제31조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제51조제2항에 따른 약식절차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실시 여부에 관한 사항 4. 제52조제3항에 따른 의견 수렴 내용과 협의 내용의 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원활한 환경영향평가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이하 "환경영향평가협의회"라 한다)는 환경영향평가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하되, 주민대표, 시민단체 등 민간전문가가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보건법」 제13조에 따라 건강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민간전문가 외에 건강영향평가분야 전문가가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
①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u>평가준비서를 작성하여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u>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이 장에서 <u>"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이라 한다)을 결정</u>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개발기본계획(이하 "개발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사업계획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인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u>1.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2. 토지이용구상안/ 3.대안/ 4.평가 항목·범위·방법 등</u> ② 행정기관 외의 자가 제안하여 수립되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제안하는 자가 평가준비서를 작성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을 결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2.2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의견수렴 개요

2.2.1 대상지역 설정

가. 전략환경영향평가

○ 본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따른 환경영향 범위를 예측·분석하기 위해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설정함

○ 대상지역의 설정은「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제2018-205호」, 「전략환경영향평가 업무 매뉴얼, 2017.12, 환경부」, 「환경영향평가 평가범위 설정 가이드라인, 2013.01, 환경부」등을 참고함

○ 계획수립 및 시행에 따른 환경적 입지 타당성 및 전반적인 환경영향을 검토하기 위해 계획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항목별로 평가 대상지역을 설정함

<표 2-1> 평가항목별 대상지역 설정(전략환경영향평가)

구 분			평가대상지역 설정 기준 및 사유	대상지역 범위	비 고
계획의 적정성			•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 대안설정·분석의 적정성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
입지의 타당성	자연환경의 보전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	• 계획지구를 포함한 조사지역의 현지조사 결과 사업시행으로 인해 동·식물상 생활사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 • 계획지구 주변 김포국제공항, 국도39호선, 국도6호선, 경인고속도로, 굴포천, 대장안지구 등 주거지 위치	• 식물상 : 계획지구 경계로부터 100m 이내 • 동물상 : 계획지구 경계로부터 500m 이내 • 양서·파충류 : 북측 농경지까지 추가조사(북측 강서구 오곡동 농경지 포함)	• 공사시 • 운영시
		지형 및 생태축 보전	• 흙쌓기 및 흙깎기 발생으로 지형변화 지역 • 표고 및 경사 분석에 따른 입지 검토 지역 • 강우시 토사유출 및 비옥토 유실 지역	• 계획지구	• 공사시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 계획 수립에 따른 경관 변화 발생 지역 (토지이용변화 및 공동주택, 건축물 입지 등)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 운영시
		수환경의 보전	• 공사시 강우에 의한 토사유출 발생 및 투입 인원으로 인한 오수 발생시 유입 가능 수계 • 운영시 점오염원 및 비점오염원에 의한 영향이 예상되는 수계	• 계획지구 및 주변수계	• 공사시 • 운영시

주)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 조사범위 :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8-205호)에 제시된 영향범위 및 심의의견을 반영하여 식물상 100m, 동물상 500m로 설정함

<표 2-1> 평가항목별 대상지역 설정(전략환경영향평가) - 계속

구 분				평가대상지역 설정 기준 및 사유	대상지역 범위	비 고
입지의 타당성	생활환경의 안전성	환경기준의 부합성	기 상	• 계획지구가 위치한 지역의 기상현황 파악 • 계획 수립에 따른 국지적 기상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	• 계획지구 인근 기상관측소	-
			대기질	• 공사시 토사이동 및 장비투입에 따른 대기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 • 계획지구의 위치적 특성상 500m 이내에 기존 주거지 등 주요 정온시설이 위치함 • 운영시 난방연료 사용 및 주변 차량운행 등에 의한 대기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 • 소각장, 공공하수처리시설, 산업단지 등 운영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현황조사	• 계획지구 경계로부터 500m 이내	• 공사시 • 운영시
			악 취	• 계획지구 주변 기 운영중인 소각장(부천시 자원순환센터), 공공하수처리시설(부천시하수, 위생종말처리장), 산업단지(서운일반산업단지) 등의 악취영향	• 계획지구	• 운영시
			소 음 · 진 동	• 공사시 건설장비 가동으로 소음·진동 영향 예상지역 • 계획지구의 위치적 특성상 300m 이내에 기존 주거지 등 주요 정온시설과 기존 소음 발생시설인 국도 6, 39호선, 경인고속도로 등이 위치 • 운영시 항공기(김포공항 인접), 차량운행으로 인한 소음 발생 영향 예상지역	• 계획지구 경계로부터 300m 이내	• 공사시 • 운영시
			토 양	• 공사시 장비투입에 따른 폐유 발생 및 지장물 철거 등에 의한 토양오염이 예상되는 지역	• 계획지구	• 공사시
			일 조 장 해	• 공동주택 및 기타 건축물 입지로 인한 일조장해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 운영시
			전 파 장 해	• 운영시 송전선로에 의한 계호기지구 내 영향예상지역(지중화로 변경 시 케이블헤드에 의한 전자파 노출 영향 등)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 운영시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 계획지구 주변 환경기초시설 연계처리 적정성 검토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 공사시 • 운영시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친환경적 자원순환	• 공사시 건설폐기물, 분뇨 등 폐기물 발생이 예상되는 지역 • 운영시 생활폐기물 발생이 예상되는 지역	• 계획지구	• 공사시 • 운영시
			온실가스	• 건설장비 투입 및 토지이용변화, 난방 등 연료사용에 의한 온실가스 발생예상 지역	• 계획지구	• 공사시 • 운영시
	사회·경제환경과의 조화성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 상위계획 및 주변 계획을 반영한 계획 수립 • 계획 수립에 따른 효율적 토지이용 계획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 운영시
		인구 및 주거		• 계획 수립에 따른 인구 및 주거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 운영시

평가대상지역				
계획지구 내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계획지구 경계		
		100m	300m	500m
○지형 및 생태축 보전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환경기준 부합성 -악 취 -토 양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수환경의 보전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환경기준 부합성 -기상 ○일조장해, 전파장해 ○인구 및 주거	○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 -식물상	○환경기준 부합성 -소음·진동	○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 -동물상 ○환경기준 부합성 -대기질

(그림 2-1) 평가대상지역 설정도(전략환경영향평가)

나. 환경영향평가

○ 본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따른 환경영향 범위를 예측·분석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설정함

○ 대상지역의 설정은「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제2018-205호」,「환경영향평가 평가범위 설정 가이드라인, 2013. 01, 환경부」등을 참고함

○ 계획시행에 따른 자연생태환경분야, 대기환경분야, 수환경분야, 토지환경분야, 생활환경분야, 사회·경제환경분야 등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항목의 평가대상지역을 설정함

<표 2-2> 평가항목별 대상지역 설정(환경영향평가)

구 분		평가대상지역 설정 기준 및 사유	대상지역 범위	비 고
자연생태환경	동·식물상	• 계획지구를 포함한 조사지역의 현지조사 결과 사업시행으로 인해 동·식물상 생활사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 • 계획지구 주변 김포국제공항, 국도39호선, 국도6호선, 경인고속도로, 굴포천, 대장안지구 등 주거지 등이 위치	• 식물상 : 계획지구 경계로부터 100m 이내 • 동물상 : 계획지구 경계로부터 500m 이내 • 양서·파충류 : 북측 농경지까지 추가조사(북측 강서구 오곡동 농경지 포함)	• 공사시 • 운영시
	자연환경 자 산	• 사업시행으로 인해 자연환경자산에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 공사시 • 운영시
대기환경	기 상	• 계획지구가 위치한 지역의 기상현황 파악 • 대기질 예측에 기초자료로 이용 • 건축물 배치에 따른 바람길(통풍) 확보 등 국지적 기상 영향 예상 지역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기상관측소)	• 공사시 • 운영시
	대 기 질	• 공사시 토사이동 및 장비투입에 따른 비산먼지, 배기가스 발생으로 대기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 • 계획지구의 위치적 특성상 500m 이내에 기존 주거지 등 주요 정온시설이 위치함 • 운영시 난방연료 사용 및 주변 차량운행 등에 의한 대기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	• 계획지구 경계로부터 500m 이내	• 공사시 • 운영시
	악 취	• 운영시 주변 소각장(부천시자원순환센터), 공공하수처리시설(부천시하수, 위생종말처리장), 산업단지(서운일반산업단지)의 악취영향이 예상되는 지역	• 계획지구	• 운영시

주)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 조사범위 :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8-205호)에 제시된 영향범위 및 심의의견을 반영하여 식물상 100m, 동물상 500m로 설정함

<표 2-2> 평가항목별 대상지역 설정(환경영향평가) - 계속

구 분		평가대상지역 설정 기준 및 사유	대상지역 범위	비 고
대기환경	온실가스	• 공사시 건설장비 투입에 따른 온실가스 발생 • 운영시 토지이용변화 및 난방 등 연료사용에 의한 온실가스 발생	• 계획지구	• 공사시 • 운영시
수환경	수 질	• 공사시 강우에 의한 토사유출 발생 및 투입 인원으로 인한 오수 발생시 유입 가능 수계 • 운영시 점오염원 및 비점오염원에 의한 영향이 예상되는 수계	• 계획지구 및 주변수계	• 공사시 • 운영시
	수리·수문	• 계획지구 및 주변수계 유황변화 분석 및 대책 수립 • 운영시 도시화로 인한 강우시 홍수유출량 변화	• 계획지구 및 주변수계	• 공사시 • 운영시
토지환경	토지이용	• 사업시행에 따른 토지이용상의 변화가 수반되는 지역 • 상위계획 및 주변 계획을 반영한 계획 수립 • 사업시행에 따른 효율적 토지활용 계획 수립	• 계획지구	• 공사시 • 운영시
	토 양	• 공사시 장비투입에 따른 폐유 발생 및 지장물 철거 등에 의한 토양오염이 예상되는 지역	• 계획지구	• 공사시
	지형·지질	• 흙쌓기 및 흙깎기 발생으로 지형변화 지역 • 강우시 토사유출 및 비옥토 유실 지역	• 계획지구	• 공사시
생활환경	친환경적 자원순환	• 공사시 지장물 철거, 훼손수목, 공사장비 및 공사인부 운용으로 인한 폐유·폐기물 등 발생이 예상되는 지역 • 운영시 생활폐기물 발생이 예상되는 지역	• 계획지구	• 공사시 • 운영시
	소음·진동	• 공사시 건설장비 가동으로 소음·진동 영향 예상지역 • 계획지구의 위치적 특성상 김포국제공항, 국도39호선, 국도6호선, 경인고속도로, 등이 주변에 위치함 • 운영시 항공기운행(김포공항), 차량운행으로 인한 소음 발생 영향 예상지역	• 계획지구 경계로부터 300m 이내	• 공사시 • 운영시
	경 관	• 주변 지역과의 경관영향 발생 지역 (토지이용변화 및 공동주택, 건축물 입지 등)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 운영시
	전파장해	• 계획지구 내·외 송전선로 입지에 따른 전파장해 영향 지역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 운영시
	일조장해	• 공동주택 및 기타 건축물 입지로 인한 일조장해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 운영시
	위생·공중보건	• 주변 소각장, 하수처리시설, 산업단지 등 운영시 건강영향에 미치는 영향	• 계획지구	• 운영시
사회·경제환경	인구·주거	• 사업시행에 따른 인구 및 주거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 운영시

평가대상지역				
계획지구 내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계획지구 경계		
		100m	300m	500m
○악취 ○온실가스 ○토양 ○지형·지질 ○친환경적 자원순환 ○공중·위생보건 ○토지이용	○자연환경자산 ○기상 ○수질(수리·수문) ○경관 ○일조장해, 전파장해 ○인구주거	○동·식물상 -식물상	○소음·진동	○동·식물상 -동물상 ○대기질

(그림 2-2) 평가대상지역 설정도(환경영향평가)

2.2.2 대안의 설정

가. 대안의 종류 설정

○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의 “대안”이란 대상계획의 목표와 방향, 환경적 목표와 기준, 추진전략과 방법, 수요와 공급, 위치와 시기, 입지 등 조건이 다른 여러 가지 안을 말함

○ 대안의 설정은 계획의 특성 및「전략환경영향평가 업무 매뉴얼, 환경부, 2017.12」와「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제2018-205호」[별표4]에 제시한 “대안의 종류와 선정방법”을 참조하였음

○ 본 계획은 부천 대장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목적으로 하는 바, 계획을 수립할 경우(Action)와 수립하지 않았을 경우(No Action)에 대한 “계획비교” 측면에서의 대안, 계획을 수립할 경우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수요·공급” 측면에서의 대안, 개발 대상 입지를 결정하는 “입지” 측면에서의 대안을 설정하여 각 대안별 비교·평가를 제시하였음

<표 2-3> 대안의 종류 및 선정방법

대안 종류	선정방법	계획지구
계획 비교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 가능한 상황(No Action)과 계획을 수립했을 때 발생 가능한 상황을 대안으로 선정	적용
수단·방법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대안으로 선정	-
수요·공급	개발에 관한 수요·공급을 결정하는 계획의 경우 수요·공급량(규모)에 대한 조건을 변경하여 대안으로 선정	적용
입지	개발 대상 입지를 결정하는 계획의 경우 대상지역 또는 그 경계의 일부를 조정하여 대안으로 선정	적용
시기·순서	개발 시기 및 순서를 결정하는 계획의 경우 시행 시기 및 진행 순서(예 : 연차별 개발) 등의 조건을 변경하여 대안으로 선정	-
기타	상기 대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대안 또는 기타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계획의 성격과 내용을 고려할 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대안	-

자료 :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제2018-205호

나. 대안의 비교 · 분석

1)계획 비교(Action, No Action)

○ 개발기본계획 수립(Action) 및 미수립(No Action)에 따른 대안별 환경적인 영향을 비교·분석하였으며, 계획비교에 따른 대안별 검토결과는 다음과 같음

<표 2-4> 계획비교(Action, No Action)

구 분	대안 1 개발기본계획 수립(Action)	대안 2 개발기본계획 미수립(No Action)
토지이용 측면	 • 계획적인 개발로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에 기여하며, 친환경적인 개발이 가능한 공공주택지구 지정 • 4차산업 실증도시, 문화 · 생태 등의 테마공원, 복합문화센터 설치 등 자족도시 기능이 강화된 공공주택사업지구 조성	 • 계획지구는 전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으로 대부분 농경지(전, 답) 등으로 이용되고 있으나, 주변지역으로 공공주택지구, 도시개발구역 등이 위치하고 있어 교통 및 인접 생활중심지와 연계하여 주변 개발압력이 높아 장·단기적으로 개별적인 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임
각종 보호지역 영향 여부	• 생태·경관보전지역, 습지보호지역, 야생생물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등 각종 보호지역과 관련 없음	• 생태·경관보전지역, 습지보호지역, 야생생물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등 각종 보호지역과 관련 없음
생태계 훼손 가능성	• 계획지구 내 생태자연도 1등급, 녹지자연도 8등급 이상 지역, 호소는 없으나, 서측 경계부 생태자연도 1등급지(굴포천)를 고려하여 가능한 녹지·공원을 조성할 계획임	• 계획지구는 농경지(전, 답)이 대부분으로 현 상태를 유지하여도 생태계에 미치는 긍정적, 부정적 영향은 미미함

<표 2-4> 계획비교(Action, No Action) - 계속

구 분	대안 1	대안 2
	개발기본계획 수립(Action)	개발기본계획 미수립(No Action)
지형의 훼손에 미치는 영향	• 표고는 5~15m로 10m정도의 표고차를 보이며, 경사도는 3°미만 지역이 98.8%로 평탄지에 위치하여 지형변화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향후 지구계획 수립시 토공계획을 최소화 하여 지형 변화를 최소화할 계획임	• 계획지구는 대부분 전, 답으로 낮은 구릉지에 둘러싸여 있으며, 대부분 평탄한 지형을 이루고 있으므로 현 상태를 유지하여도 지형에 미치는 긍정적, 부정적 영향은 없음
쾌적한 생활 환경의 유지에 미치는 영향	• 계획시행으로 생활환경(대기질, 소음 · 진동 등)에 영향이 예상되므로 환경친화적인 개발이 가능하도록 환경영향 최소화를 위한 저감대책의 수립이 요구됨	• 현 상태를 유지하게 되므로 생활환경(대기질, 소음·진동 등)에 미치는 영향은 없음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 계획시행으로 지형변화 및 건축물 신축에 따른 경관변화가 예상되므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저감 대책 수립이 요구됨	• 계획지구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현 상태를 유지하여도 자연경관에 미치는 긍정적, 부정적 영향은 없음
환경기준의 유지 및 달성에 미치는 영향	• 계획시행으로 생활환경(대기질, 소음·진동 등)에 영향이 예상되나, 환경영향 최소화를 위한 저감대책 수립으로 환경기준 유지 및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 현 상태를 유지하게 되므로 생활환경(대기질, 소음·진동 등)에 미치는 영향은 없음

2)수요 · 공급에 따른 대안별 검토

○ 수요·공급에 따른 대안별 검토를 위하여 토지이용구상(안)에 대한 2개의 대안을 비교·분석하였으며, 수요·공급에 따른 대안별 검토결과는 다음과 같음

<표 2-5> 토지이용구상(안) 비교

구 분	대안 1	대안 2
개 요	• 대상지 주변의 토지이용현황 및 서측 환경기초시설의 영향을 고려한 토지이용구상 안	• 김포공항의 소음 영향 등을 고려한 주거기능 배치 및 자족기능 분산배치 안
토 지 이 용 계 획		
장 · 단점	• 계획지구내 약 2만호 공급 가능함 • 대상지 주변의 기존 산업단지와 연계하여 서측에 자족기능을 집적함으로서 산업 효율성 증대 • 주변 토지이용현황과 연계한 산업 및 주거지역의 배치로 토지이용 효율성 증대 • 동측 주거지역의 김포공항 소음영향저감 방안 수립 필요	• 계획지구내 약 2만호 공급 가능함 • 김포공항 소음영향 등을 고려, 동측에 정온시설의 배치를 지양하고 자족기능 등 비정온시설 배치 • 자족기능의 분산배치로 산업 효율성 저하 및 동측 기존 주거지역의 경관 등의 악영향 예상 • 기존 주거지역과의 연속성 등 토지이용 효율 저하

3)입지에 따른 대안별 검토

○ 본 계획을 시행함에 있어 환경 친화적 토지이용계획 수립을 위해 계획지구 경계에 대한 2개의 대안을 비교·분석하였으며, 입지에 따른 대안별 검토결과는 다음과 같음

<표 2-6> 지구계 비교

구분	대안 1	대안 2
①	도시계획시설(하수처리장, 자원순환센터) 경계	도시계획시설(하수처리장, 자원순환센터) 경계
②	도시계획시설(벌말로) 경계	도시계획시설(벌말로) 경계
③	지적(구거) 경계	도시계획시설(석천로) 경계
④	하천(굴포천) 경계+시계(부천시)	도시계획도로(봉오대로) 경계
⑤	도시계획시설(석천로) 경계	오정일반산업단지경계
⑥	도시계획도로(봉오대로) 및 오정IC(지적) 경계	주거지역(오정휴먼시아아파트)경계
⑦	오정일반산업단지 및오정생활휴먼시아 경계	도시계획시설(소사로) 경계
⑧	도시계획시설(소사로) 경계	지적(구거) 경계(소음대책지역 75웨클제외)
⑨	지적(구거) 경계(소음대책지역 75웨클제외)	시계(서울시-부천시)
⑩	시계(서울시-부천시)	대장안지구경계
⑪	대장안지구경계	지적(동부간선수로) 경계(70웨클제외)
⑫	하천(여월천) 경계	-
지구계		
규모	3,434,660㎡ (약 100만평)	3,674,169㎡ (약 111만평)

<표 2-6> 지구계 비교 - 계속

구분	대안 1	대안 2
장·단점	•서울시와 접하며 국도39호선, 봉오대로와 연접, 외곽순환고속도로(계양IC), 경인고속도로(부천IC)와 1km거리에 위치하여 광역교통 및 도심 접근성 우수함 •사업지 주변으로 대장안지구, 부천원종지구 등 신규 택지개발지구와 오정산업단지, 오정물류단지, 서운산업단지 등이 입지하여 연계개발 용이 •굴포천변 용지를 추가편입 함으로써 계획지구 서측으로 계양지구(3기신도시)와 연계·통합개발 추진 •추후 S-BRT, 도로 신설·확장 등을 통해 주변지역으로의 교통 접근성이 용이해짐에 따라 시너지효과 기대 및 도시의 조기 활성화 도모	•서울시와 접하며 국도39호선, 봉오대로와 연접, 외곽순환고속도로(계양IC), 경인고속도로(부천IC)와 1km거리에 위치하여 광역교통 및 도심 접근성 우수함 •주거지역인 대장안지구를 제외하고 북측 부천시 경계내의 약 40만㎡ 정도의 용지를 추가편입하는 안 •추가확보부지는 환경기초시설 300m 내의 지역이 약 50%로서 양호한 주거환경 확보가 어려워 주거용지로서 실용도가 낮음 •또한 김포공항 등으로 인한 북측의 도시확장 가능성이 낮음 •굴포천으로 인해 서측 계양지구(3기신도시)와 단절 발생

2.2.3 평가항목 및 범위 등의 설정

가. 전략환경영향평가

1)평가항목의 선정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을 위한 평가항목은「전략환경영향평가 업무 매뉴얼, 2017. 12, 환경부」및「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2018-205호」를 근거로「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에 제시된 [별표1] "환경영향평가서등의 분야별 세부평가항목"을 선정함

<표 2-7> 평가항목 설정

평가항목				선정사유	비 고
계획의 적정성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 도시기본계획과 관련된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대안설정·분석의 적정성			• 계획의 비교 측면에서 대안 비교·검토	
입지의 타당성	자연환경의 보전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의 동·식물상 영향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		• 계획지구의 지형변화 및 주변지역과 연계되는 생태축 변화 등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 공동주택 건설에 따른 주요 조망점에서의 경관변화 예상 등	
		수환경의 보전		• 계획시행으로 발생되는 토사유출, 오수 및 비점오염물질의 주변 수계 영향 등 • 수질오염총량 대상지역(굴포A 단위유역)	
	생활환경의 안정성	환경기준 부합성	기상	• 계획 수립에 따른 국지적 기상 영향이 예상 되는 지역	
			대기질	• 계획지구 주변환경을 고려한 대기질 현황 파악 • 계획시행에 의한 에너지사용, 교통량 증가로 발생되는 대기질 영향 등 • 소각장, 공공하수처리시설, 산업단지 등 운영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현황조사	
			악취	• 계획지구 주변 기 운영중인 환경기초시설(소각장,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의 악취영향 예상	
			소음·진동	• 계획지구 주변환경을 고려한 소음·진동 현황 파악 • 계획시행에 의한 건설장비 가동, 교통량 증가로 발생되는 영향 등	
			토양	• 계획시행으로 공사시 폐유발생, 지장물철거 등에 의한 토양오염 예상 등	
			전파장해	• 계획지구 내·외 송전선로 입지에 따른 전파장해 영향 예상	
			일조장해	• 공동주택 및 기타 건축물 입지로 인한 일조장해 영향 예상	

<표 2-7> 평가항목 설정 - 계속

평가항목				선정사유	비 고
입지의 타당성	생활환경의 안정성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 계획시행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오수, 폐기물 등의 처리 • 환경기초시설의 연계처리 여부 등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친환경적 자원순환	• 계획시행으로 분뇨 및 임목폐기물, 생활폐기물 등의 발생에 따른 영향	
			온실가스	• 계획시행에 따른 공사시 건설장비 투입, 토지 이용변화, 운영시 난방 등 연료사용에 의한 온실가스 발생	
	사회·경제 환경과의 조화성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 계획수립에 따른 토지이용의 변화 예상	
		인구 및 주거		• 계획수립 시 인구 및 주거 변화에 따른 영향	

2)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별 평가범위 및 방법 설정

○ 개발기본계획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위해 선정한 평가항목별 현황조사, 영향예측의 범위 및 방법을 다음과 같이 설정함

<표 2-8>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별 평가범위 및 방법 설정

평가항목			평가범위	평가방법
계획의 적정성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 계획지구	•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검토
	대안설정·분석의 적정성		• 계획지구	• 계획의 비교측면에서 설정된 대안을 환경적 측면에서 비교·분석
입지의 타당성	자연환경의 보전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	• 식물상 : 계획지구 경계로부터 100m 이내 • 동물상 : 계획지구 경계로부터 500m 이내 • 양서·파충류는 계획지구 북측 농경지까지 추가조사(북측 강서구 오곡동 농경지 포함) • 현황조사(3회)	• 계획수립 범위를 고려하여 보전하여야 할 동·식물 현황 및 서식환경을 파악하고 생태계 영향을 예측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	• 계획지구	• 계획내용을 토대로 지형변화 및 생태축 변화여부 검토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 계획내용을 토대로 경관변화를 가시권 검토 등을 통해 평가

<표 2-8>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별 평가범위 및 방법 설정 - 계속

평가항목				평가범위	평가방법
입지의 타당성	자연환경의 보전	수환경의 보전		• 계획지구 및 주변수계(굴포천, 동부간선수로 등) • 현황조사(2회) - 하천수 : 10지점 - 지하수 : 3지점	• 시설계획에 따른 토사유출량 및 발생오수 영향예측 • 시설운영에 따른 오수발생량, 비점오염원 발생부하량 산정, 평가 • 수질오염총량 협의
	생활환경의 안정성	환경기준 부합성	기상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 계획지구 주변기상대 최근 10년 기상자료 분석 및 영향 검토
			대기질	• 계획지구 및 경계로부터 500m 이내 • 현황조사(2회) - 8지점	• 계획내용을 토대로 공사시 및 운영시 대기오염 발생 및 영향을 예측하여 대기 환경기준과 비교 평가
			악취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 현황조사(2회) - 6지점	• 주변 환경기초시설(소각장, 하수처리시설) 및 산업단지의 악취영향을 정성적으로 예측, 배출허용기준과 비교・평가
			소음·진동	• 계획지구 및 경계로부터 300m 이내 • 현황조사(2회) - 6지점	• 계획내용을 토대로 공사시 소음·진동, 운영시 소음영향을 예측하고, 환경기준 등과 비교 평가
			토양	• 계획지구 • 현황조사(2회) - 6지점	• 계획시행시 폐유발생, 지장물철거 등에 의한 토양오염 영향예측
			일조장해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건축물 신축으로 인한 계획지역 내 일조영향 예측
			전파장해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 송전선로 입지구간 전파장해 영향 예측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 계획시행시 발생되는 오염물질의 환경기초시설 연계 처리 방안 검토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친환경적 자원순환	• 계획지구	• 폐기물발생량 산정 및 폐기물 처리정책을 고려한 자원활용과 에너지 순환성 검토
			온실가스	• 계획지구	• 계획시행시 연료사용 및 산림훼손에 따른 온실가스 현황 예측
	사회·경제 환경과의 조화성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 주변 현황 및 지형 등 여건을 고려한 환경친화적 토지이용계획 수립여부 검토
		인구 및 주거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 인구유입 및 주거변화(주택공급량 및 분양률 등 고려)에 따른 영향 및 사업규모 적정성 검토

나. 환경영향평가

1)평가항목의 선정

○ 환경영향요소는 공사단계와 운영단계로 구분하였으며, 사업특성 및 입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환경영향요소와 평가항목과의 관계를 행렬식 대조표로 작성하였음

<표 2-9> 환경영향요소 및 평가항목간 행렬식 대조표

환경요소 \ 환경항목			자연생태환경		대기환경				수환경	토지환경			생활환경						사회경제환경
			동·식물상	자연환경자산	기상	대기질	악취	온실가스	수질(수리·수문)	토지이용	토양	지형·지질	친환경적자원순환	소음·진동	위락·경관	일조장해	전파장해	위생·공중보건	인구·주거
공사단계	자연형질변경	지형변화	▲	▲						▲	▲	▲			▲				
		산림벌채	▲	▲				▲							▲				
		사면발생	▲						◆			▲			▲				
		토지점용		▲				▲		▲									
	토공기초작업 및 시설물공사	건설장비 운영	▲			◆		▲			▲		▲	◆					
		토사이동				◆			◆										
		토공기초 작업				◆													
		건축물 공사	▲			◆		▲			▲			◆					
		폐기물 발생					▲				▲		▲						
		공사인부 투입							▲				▲						
운영단계	도로이용	배기가스 발생	▲			▲		▲											
		도로소음 발생	▲											▲					
	주택입지	폐기물 발생	▲								▲		▲						
		오염물질 발생				▲												▲	
		오·폐수 발생							◆				▲						
		건축물 입지			▲						▲				▲	▲			
		시설물 존치	○					▲			△								
	지역개발	주거환경 변화					▲			○									○
		지역경제 변화								○									
		송전선로 지중화								○							△		

주) 행렬식 대조표 등급설정 기준

◎ : 개발되면 상당히 좋다.
○ : 개발되면 비교적 긍정적이다.
△ : 개발되면 긍정적이나 효과는 미약하다
▲ : 악영향은 있으나 미약하다.
◆ : 악영향이 다소 있다
● : 악영향이 크다.

2)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 선정

○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을 위한 평가항목은「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2018-205호」를 근거로「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에 제시된 [별표1] "환경영향평가서등의 분야별 세부평가항목"을 선정함

<표 2-10> 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 선정 및 사유

분 야	항 목	선정결과			선정결과에 대한 사유
		중점	현황	제외	
자연생태환경	동·식물상	○	-	-	• 공사 및 운영시 동·식물상(보호대상 동·식물 등) 영향예측 및 대책
	자연환경자산	-	○	-	• 기존문헌 등을 통한 계획지구 및 주변 자연환경자산 현황 파악
대기환경	기상	-	○	-	• 계획지구 주변 대기질 예측시 기초자료로 활용(기상대 및 인근AWS자료)
	대기질	○	-	-	• 공사시 토사이동 및 장비투입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발생 • 운영시 차량 및 시설 등 연료 사용에 의한 대기오염물질 발생
	악취	-	○	-	• 계획지구 주변 악취배출시설 현황 및 악취 현황 파악
	온실가스	○	-		• 공사 및 운영시 온실가스 발생
수환경	수질	○	-	-	• 공사시 강우에 따른 토사유출로 수계에 미치는 영향 예상 • 공사인부 투입에 의한 오수 발생 • 운영시 오수, 비점오염물질 발생 및 적정처리 대책 • 수질오염총량 협의
	수리·수문	○	-	-	• 토지이용 변화 등에 따른 수리·수문 변화 검토
	해양환경	-	-	○	• 사업시행과 연관 없음

<표 2-10> 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 선정 및 사유 - 계속

분 야	항 목	선정결과			선정결과에 대한 사유
		중점	현황	제외	
토지환경	토지이용	○	-	-	• 위치·규모 등에 관한 대안 검토·선정
	토양	○	-	-	• 계획지구의 토양오염 현황 및 운영시 토양오염 요인 파악
	지형·지질	○	-	-	• 지형·지질 현황조사 및 흙깎기·흙쌓기에 따른 영향 분석 및 대책 수립
생활환경	친환경적 자원순환	○	-	-	• 공사 및 운영시 폐기물 발생 예상 및 적법 처리대책 수립
	소음·진동	○	-	-	• 공사시 공사 장비투입에 의한 소음·진동 영향 예상 • 운영시 주변 국도, 고속화도로 및 내부도로 이용 차량, 김포국제공항 항공기운행에 따른 소음·진동 영향 예상
	위락・경관	○	-	-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의 경관요소 파악 • 사업시행으로 인한 경관 영향 분석
	위생・공중보건	-	○	-	• 사업시행으로 인한 건강영향에 미치는 영향 분석
	전파장해	○	-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의 전파장해 영향 예상
	일조장해	○	-	-	• 사업시행으로 인한 일조장해 영향 분석
사회·경제환경	인구·주거	-	○	-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의 인구 및 주거현황 파악
	산업	-	-	○	• 계획시행으로 인한 직간접적인 영향 미미함에 따라 제외

3)환경영향평가 평가범위 및 방법 설정

○ 본 사업계획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위해 선정한 평가항목별 현황조사, 평가범위 및 방법을 다음과 같이 설정함

<표 2-11> 환경영향평가 항목별 평가범위 및 방법 설정

항 목		평가범위 및 방법		비 고
		범 위	방 법	
자연생태 환 경	동 · 식 물 상	• 식물상 : 계획지구 경계로부터 100m 이내 • 동물상 : 계획지구 경계로부터 500m 이내 • 양서·파충류는 계획지구 북측 농경지까지 추가 조사(북측 강서구 오곡동 농경지 포함) • 현황조사(2회)	• 문헌조사 및 현지조사 • 육상 및 육수 동 · 식물상 현황조사 - 식물상 및 식생, 포유류, 조류, 육상곤충류, 양서·파충류, 어류, 담수무척추동물 등 • 사업시행으로 인한 생태계 변화 예측 및 보전대책 수립	• 공사시 • 운영시
	자연환경자산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 문헌조사 및 현지조사 • 주변지역의 자연환경자산 현황조사 및 영향 검토	• 공사시 • 운영시
대기환경	기 상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 계획지구 인근 기상자료(최근 10년) 분석 및 영향 검토	-
	대 기 질	• 계획지구 경계로 부터 500m 이내 • 현황조사(2회)	• 문헌조사 및 현지조사 • 공사시 토사이동 및 공사차량에 의한 대기영향 예측(모델링 활용) 및 저감대책 수립 • 운영시 지구 내 연료사용, 도로 차량 운행 등에 따른 대기영향을 모델을 이용한 정량적 예측 및 저감대책 수립	• 공사시 • 운영시
	악 취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 문헌조사 및 현지조사 • 주변 환경기초시설 및 산업단지 악취영향 정성적 예측, 배출허용기준과 비교 · 평가	• 운영시
	온 실 가 스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 문헌조사 및 현지조사 • 공사시 및 운영시 연료사용 및 산림훼손에 따른 온실가스 현황 예측	• 공사시 • 운영시
수 환 경	수 질 (수리·수문)	• 계획지구 및 주변수계 • 현황조사(2회)	• 문헌조사 및 현지조사 - 수질오염현황 조사 • 공사시 토사유출에 따른 예측 및 저감대책 수립 • 운영시 오수, 비점오염물질 발생 및 처리 • 수질오염총량 협의 • 공사시 우수유출 및 운영시 재해(홍수 등) 영향 검토	• 공사시 • 운영시

<표 2-11> 환경영향평가 항목별 평가범위 및 방법 설정 - 계속

항 목		평가범위 및 방법		비 고
		범 위	방 법	
토지환경	토 지 이 용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 문헌조사 및 현지조사 •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검토 • 효율적 토지이용계획 수립 검토	• 공사시 • 운영시
	토 양	• 계획지구 • 현황조사(2회)	• 문헌조사 및 현지조사 • 공사시 건설장비 투입 및 지장물 철거에 따른 토양오염 예측 및 저감방안 수립	• 공사시
	지 형 · 지 질	• 계획지구	• 문헌조사 및 현지조사 • 사업시행에 따른 지형변화 및 사면 발생에 따른 영향 및 저감방안 수립 • 토공계획 검토	• 공사시
생활환경	친 환 경 적 자 원 순 환	• 계획지구	• 문헌조사 및 현지조사 • 공사시 건설폐기물 발생 및 처리대책 • 운영시 생활폐기물 발생 및 처리대책	• 공사시 • 운영시
	소 음 · 진 동	• 계획지구 경계로 부터 300m 이내 • 현황조사(2회)	• 문헌조사 및 현지조사 - 소음·진동현황 조사 • 건설장비 투입에 따른 소음·진동 영향 예측 및 저감방안 수립 • 운영시 주변 소음원(도로, 항공기) 및 계획지구 내부도로 인한 영향 검토	• 공사시 • 운영시
	위 락 · 경 관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 문헌조사 및 현지조사 • 주변 환경과의 조화성 검토	• 운영시
	일 조 장 해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 문헌조사 및 현지조사 • 주거시설의 일조권 확보 검토	• 운영시
	전 파 장 해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 문헌조사 및 현지조사 • 송전탑 입지에 따른 영향검토	• 운영시
	위생·공중보건	• 계획지구	• 문헌조사 및 현지조사 • 운영시 건강영향에 미치는 영향검토	• 운영시
사회·경제 환 경	인 구 · 주 거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 문헌조사 및 현지조사 • 인구 유입 및 주거변화에 따른 영향 검토	• 운영시

2.2.4 환경현황 조사계획

가. 조사목적

○ 계획수립에 따른 환경질 조사는 계획지구 주변지역의 환경현황을 정량적으로 파악하고, 계획시행에 따른 공사시 영향예측 및 저감대책 수립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데 목적이 있음

○ 한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결과 및 의견수렴 등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조사계획은 검토하여 계획에 반영할 것임

나. 조사지점

○ 환경질 조사 지점은 사업계획 분석 및 현장조사를 통해 계획지구의 주변 환경, 수계, 정온시설 등 영향예상지역 및 대표성을 고려하여 선정함

- 조사지점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다. 조사항목

○ 조사항목은 대기질, 악취, 지표수질, 지하수질, 토양, 소음·진동이며, 세부항목은 다음과 같음

<표 2-12> 조사항목 및 지점

구 분	조 사 항 목	조사지점	항목수
대 기 질	SO_2, CO, NO_2, PM-10, PM-2.5, O_3, Pb, 벤젠	8지점	8개
악 취	복합악취	6지점	1개
지표수질	pH, BOD, SS, DO, 총대장균군, Cd, As, CN, Hg, 유기인, Pb, Cr^{6+}, PCB, ABS, COD, T-P, TOC	10지점	17개
지하수질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Pb, Hg, As, Cr^{6+}, NH_3-N, NO_2-N, Cd, Al, 페놀, $KMnO_4$소비량, 총경도, 맛, 냄새, Cu, 색도, pH, Zn, 염소이온, 증발잔류물, Fe, Mn, 탁도, 황산이온	3지점	25개
토 양	Cd, Cu, As, Hg, Pb, Cr^{6+}, Zn, Ni, F, 유기인화합물, PCB, CN, 페놀, 트리클로로에틸렌(TCE),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석유계통탄화수소(TPH), 벤조(a)피렌	4지점	21개
소음·진동	소음 및 진동	6지점	2개

<표 2-13> 조사지점별 위치

구 분		환경질 조사지점	비 고
대기질	A-1	인천시 계양구 동양동 583번지(당산초등학교)	-
	A-2	인천시 계양구 서운동 109-2번지(계수중학교)	-
	A-3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오정동 428-48번지(오정 119 안전센터)	-
	A-4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오정동 732번지(오정생활휴먼시아3단지아파트)	-
	A-5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104-3번지(원일초등학교)	-
	A-6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275-11번지(수주고등학교)	-
	A-7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대장동 138-5번지(대장복지회관)	-
	A-8	서울시 강서구 오곡동 516-3번지	-
악취	O-1	인천시 계양구 박촌동 214-4번지	-
	O-2	인천시 계양구 병방동 225-2번지	-
	O-3	경기도 부천시 오정동 346번지	-
	O-4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104-3번지(원일초등학교)	-
	O-5	경기도 부천시 대장동 196-1번지(대장분교)	-
	O-6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대장동 138-5번지(대장복지회관)	-
하천 수질	W-1	인천시 계양구 서운동 122-4번지(도두리2교) 인근	굴포천
	W-2	인천시 계양구 동양동 68-3번지(당미교) 인근	굴포천
	W-3	인천시 계양구 귤현동 26-15번지(귤현1교) 인근	굴포천방수
	W-4	인천시 계양구 상야동 341-2번지(무명교) 인근	굴포천
	W-5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오정동 427-2번지(삼정3교) 인근	삼정1천
	W-6	서울시 강서구 오곡동 210-5번지(무명교) 인근	동부간선수로
	W-7	서울시 강서구 과해동 660-1번지(과해교) 인근	동부간선수로
	W-8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오정동 1-27번지(무명교) 인근	여월천
	W-9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108-1번지(농로) 인근	고리울천
	W-10	서울시 강서구 오쇠동 172-5번지(무명교) 인근	고리울천
지하 수질	GW-1	경기도 부천시 오정동 486번지	-
	GW-2	경기도 부천시 오정동 346번지	-
	GW-3	경기도 부천시 대장동 242-13번지	-
토양	S-1	경기도 부천시 대장동 684-3번지	밭
	S-2	경기도 부천시 대장동 365번지	밭
	S-3	경기도 부천시 오정동 330-7번지	밭
	S-4	경기도 부천시 원종동 48-3번지	밭
소음· 진동	NV-1	경기도 부천시 오정동 494번지	도로교통소음
	NV-2	경기도 부천시 오정동 506-111번지	-
	NV-3	경기도 부천시 원종동 192-5번지	도로교통소음
	NV-4	경기도 부천시 대장동 196-1번지(대장분교)	생활소음
	NV-5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대장동 138-5번지(대장복지회관)	생활소음
	NV-6	경기도 부천시 대장동 758번지	도로교통소음

다. 조사항목

○ 각 항목별 공정시험기준에 제시된 조사 및 분석 방법에 준하여 실시할 계획임

(그림 2-3) 환경질 조사지점도

2.2.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 계획

가. 전략환경영향평가

○ 본 계획의 전략환경영향평가시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수렴을 시행할 계획임

1) 주민 등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고·공람

○ 「환경영향평가법」제13조에 의거하여 주민 등의 의견수렴을 시행할 것임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고 : 일간신문 및 지역신문 / 1회 이상

<표 2-14>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고내용

구분	내 용
공고내용	1. 개발기본계획의 개요 2.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공람 기간 및 장소 3.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공청회 개최 여부 의견 포함)의 제출시기 및 방법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공고 실시사실 게시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관할 시·군·구 정보통신망 또는 개발기본계획 수립 행정기관(국토교통부) 정보통신망

  : 공고·공람 내용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요약문

-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https://www.eiass.go.kr)

  : 공고·공람 내용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 공람기간 : 20~40일 범위(공휴일 및 토요일은 공람기간에 미산입)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관할 시·군·구청장과 사전 협의하여 시·구청, 주민센터 등에 주민열람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을 비치
- 공람장소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과 함께 소정양식의 '평가서초안 열람부', '주민의견 제출서'를 비치할 것임

2) 주민설명회 개최

○ 주민설명회는「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공람기간 내에 실시하며, 설명회 일시, 장소 등은 평가대상지역 관할 지자체와 협의·결정하고,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공고 시 개최내용을 포함하여 공고토록 할 것임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이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치는 경우, 각각의 시·군·구에서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이 각각의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하나의 시・군・구에서 개최할 수 있음

○ 또한, 주민설명회 개최 후「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제16조제1항에 의거하여 공청회 개최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공청회를 개최할 것임

3) 설명회 또는 공청회의 생략

○ 설명회 또는 공청회가 주민 등의 개최 방해 등의 사유로 개최되지 못하거나 개최되었더라도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경우에는「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공고 등의 조치를 취할 것임

- 설명회를 생략한 경우
  -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설명회를 생략하게 된 사유 및 설명자료 열람방법 등을 각각 1회 이상 공고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 또는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정보통신망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설명회를 생략하게 된 사유 및 설명자료 등을 게시
- 공청회를 생략한 경우
  - ・공청회를 생략하게 된 사유, 의견제출 시기 및 방법, 설명자료 열람방법 등을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

나. 환경영향평가

○ 향후 환경영향평가시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에 의거하여 주민 등의 의견수렴을 시행할 계획임

1) 주민 등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고·공람

○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에 의거하여 주민 등의 의견수렴을 시행할 것임

○ 의견수렴 주체 : 사업지역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고 : 일간신문 및 지역신문 / 1회 이상

○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고내용

구분	내 용
공고내용	1. 사업의 개요 2.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공람 기간 및 장소 3.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공청회 개최 여부에 대한 의견을 포함한다)의 제출 시기 및 방법

○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공고 실시사실 게시

- 사업지역 관할 시·군·구 정보통신망

  : 공고·공람 내용,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요약문

-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https://www.eiass.go.kr)

  : 공고·공람 내용,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 공람기간 : 20~60일 범위 (공휴일 및 토요일은 공람기간에 미산입)
- 또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이 위치하는 관계 시장·군수·구청장과 사전 협의하여 해당 시·구청, 주민센터 등에 환경영향평가서(초안)을 비치하여 주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임
- 공람장소에는 환경영향평가서(초안)과 함께 소정양식의 '평가서초안 열람부', '주민의견 제출서'를 비치할 것임

2) 주민설명회 개최

○ 주민설명회는「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공람기간 내에 실시하며,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관할 지자체와 설명회 개최 장소 등에 관해 사전 협의하고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는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공고시 개최내용을 포함하여 공고토록 할 것임

○ 또한, 주민설명회 개최 후「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제40조제1항에 의거하여 공청회 개최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공청회를 개최할 것임

3) 설명회 또는 공청회의 생략

○ 설명회 또는 공청회가 주민 등의 개최 방해 등의 사유로 개최되지 못하거나 개최되었더라도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경우에는「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공고 등의 조치를 취할 것임

- 설명회를 생략한 경우
  -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설명회를 생략하게 된 사유 및 설명자료 열람방법 등을 각각 1회 이상 공고
  - ·해당 시·군·구의 정보통신망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설명회를 생략하게 된 사유 및 설명자료 등을 게시
- 공청회를 생략한 경우
  - ·공청회를 생략하게 된 사유, 의견제출 시기 및 방법, 설명자료 열람방법 등을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